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 2006. 3. 30, 최종개정 : 2019. 8.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쇼핑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과와 위원회 규정의 적절함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상법」 제409조제2·3항 준용)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시 요구되는 의결권 제한을 충족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을 부여 받은 이사 중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위원 전원은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자본시장법」 제26조제2항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내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대행자를 결정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한 자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동 요청을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팩스,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지의 결정
- 다.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자회사 포함)의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
 - 나.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다. 이사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사의 보고 수령
 -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 제기시 회사의 대표
 - 마.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여부 결정
 - 바.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고 한다)의 감사 또는 검토를 필한 연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의 공시 전 검토 포함)
 - 사. 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
 - 아. 감사인의 보수와 감사계약 및 독립성과 자격요건에 관한 검토
 - 자. 감사인과 이사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조정
 - 차.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카.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타.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 파.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하.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운영실태를 평가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 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의 작성·관리
 - 너.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 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4. 회사의 준법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각종 공시 및 신고 의무 준수 여부 검토
 - 나.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 5.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검토 및 윤리규정의 정기적 검토, 수정, 보완
-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인의 선임 등

제14조(선임) ① 위원회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에 대하여 승인한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제15조(감사인의 변경)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6조(감사인의 해임)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 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제17조(감사업무의 사전동의) ① 감사인이 수행하는 모든 감사 관련 업무와 비감사 관련 업무는 위원회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하기의 비감사 업무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감사계약에 규정된 비감사 업무
2. 감사인의 당해 연도 총 감사 보수의 5% 이내에서의 통상적인 비감사 업무

제18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1조(사후확인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소집 통지, 부의 안건의 정리 및 배포,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의 접수) ① 위원회는 직원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 및 이러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① 이 규정은 2014. 2. 6.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 8. 23.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기타)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타규정, 지침 중 이 규정과 상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규정이 우선한다.

제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